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보도 자료(Press Release)

배포일시	2024년 11월 7일	보도일시	2024년 11월 7일(즉시)
사진	유 ■ 무 □	쪽수	5쪽(본문1, 별첨4)

GOPAX bithumb UPbit korbit coinone

DAXA,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마련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마련해 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크게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및 지급기준 ▲이용료율의 주기적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내부 지급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모범규준은「가상자산업감독규정」제5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제정 및 운영해야 하는 이용자예치금 산정기준과 지급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지원 아래 DAXA 중심으로 마련됐다. DAXA 회원사는 이번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자체 내규를 마련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모범규준은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시 운용수익과 직간접 비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용자별 차등을 두지 않도록 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운용수익의 변동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예치금 운용수익이 아닌 여타 재원으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용료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주기적(분기 1회 이상)으로 예치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사전에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와 준법감시인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재산정된 이용료율은 최소 7영업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이용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DAXA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의 예치금 이용료율에 대한 비교 공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예치금 운용수익을 이용자께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DAXA 회원사들은 합리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를 함께 논의해 왔다"며, "이번 모범규준과 요율공시가 국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좋은 지표로 기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끝.

별첨#1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정 2024.1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준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에 따라 이용자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준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DAXA"라 한다)의 회원사가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정·운영하여야 하는 이용자예치금 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에 관한 내부기준(이하 "내부 지급기준"이라 한다)에서 이용료율을 산정하고 이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가상자산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이용자예치금"이란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이용자예치금의 이용대가를 말한다.
3. "직접비"란 관리기관 수수료 등 이용자예치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4. "간접비"란 감독분담금, 전산비 등 이용자예치금 외의 업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2장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의 산정 및 지급

제4조(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①사업자는 이용자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용수익과 이용자예치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을 산정한다.

②사업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용자별로 적용되는 이용료율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자는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시 직접비 및 간접비를 구분하여 정한 후 종합하여 결정한다. 이 때, 예치금 외의 업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비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이용자예치금을 통한 운용수익이 아닌 재원을 이용자예치금 이용료 명목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자가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한 이용자예치금 운용수익이 변동되어 이용자에게 안내한 이용료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 그 부족액에 한하여 사업자 고유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용료 관련 직·간접비 구분 및 배분절차(예시)>

- ❑ **(1단계)** 사업자의 총 비용을 항목별 세부비용으로 구분
- ❑ **(2단계)** 각 비용별로 이용자예치금과의 연관여부를 확인
- ❑ **(3단계)** 각 비용별로 이용자예치금과의 연관정도를 직·간접비로 분류
- ❑ **(4단계)** 직접비는 이용자예치금 이용료 비용에 전액배분
- ❑ **(5단계)** 간접비는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

제5조(이용자예치금 이용료의 지급) 사업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용자에게 이용료 지급을 보류하거나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의 내부통제절차

제6조(주기적 재산정) 사업자는 시장금리 변동 또는 관리기관에서의 운용수익 등을 감안하여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의 적정성을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용료율을 재산정한다.

제7조(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①사업자가 제6조에 따라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거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동 산정내역의 적정성 및 이용료율 변경 필요성 등을 점검하는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한다.

제8조(내부 지급기준 마련) ①사업자는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와 관련된 내부 지급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내부 지급기준에는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및 운영과 관련한 업무분장,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이용료율 산정기준 및 내부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등 안내) ①사업자는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등이 변경되는 경우, 최소 7영업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지하고,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개별 이용자에게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재산정 결과가 DAXA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될 수 있도록 이용자 예치금이용료율 현황을 DAXA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준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첨#2 **DAXA 및 금융감독원 담당자명 및 연락처**

담당부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책임자	부장	홍 균	02-6959-8084
		담당자	과장	김예진	02-6959-8087
		홍보팀장	과장	유민상	02-6959-8084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책임자	팀장	서강훈	02-3145-8314
		담당자	선임조사역	김혜선	02-3145-8316